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

부　　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시한)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.

③(적용례)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22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이전에 취득하였거나, 1999년 6월 30일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④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